

장학금지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학정신과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규정하기 위하여 학생종합복지위원회를 운영한다.

제2장 장학금의 종류

제3조(구분)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의 구분은 등록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교내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기탁 및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1. 예원 장학금
2. 특별 장학금
3. 신입우수 장학금
4. 체육특기 장학금
5. 예능 장학금
6. 보훈 장학금
7. 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8. 학부 성적우수 장학금
9. 일반 장학금
10. 근로 장학금
11. 공로 장학금
12. 가족 재학 장학금<개정 2021.3.18.>
13. 후생복지 장학금
14. 외국인 장학금
15. 동창회 장학금
16. 산학장학금
17. 해외유학 장학금
18. 서영춘 장학금
19. 특성화 장학금
20. 총장 장학금<신설 2013.12.4>
21. 희망 장학금<신설 2013.12.4>
22. 교육기부 장학금<신설 2013.12.4>
23. 컬처라이센싱 장학금<신설 2013.12.4>
24. 장애우가정 장학금<신설 2013.12.4.>
25. 나눔장학금<신설 2016.2.15>
26. 창업지원장학금<신설 2016.2.15>
27. 국가장학금유형2(교비)장학금<신설 2016.2.15.>
28. 재난특별장학금<신설 2020.09.17.>

29. 특별장학금(신입생 지원)<신설 2021.3.18.>

30. 토픽장학금<신설 2022.1.24>

제5조(교외장학금) 교외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금을 기탁하여 장학 내용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제시요건에 따라 지급하며 그 외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장 장학생 선발

제6조(선발대상) 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인정이수학점인 기준학점을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4학년 2학기 장학지급사정에 따른 기준학점은 최저 9학점이상이어야 한다.

1. (삭제)
2. 해당 종류별로 지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3. 기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자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재입학자
2.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3. 기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장학생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되는 자

제9조(장학생 선정 기준)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를 선정한다.
2. 장학대상자의 가계사정을 각별히 고려한다.
3. 장학대상자 중 면담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되 학년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평균평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한다.

가. 총점순위

나. 100점 환산 순위

제10조(장학생 배정) ① 매학기 학부(과)에 배정하는 장학금 지급인원 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학부(과)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다만, 장학금지급이 결정된 자는 재학생수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② 근로장학생은 근무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 학부(과)별로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자 구비서류)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신청서에 장학종별 및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부(과)장을 경유 입학홍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7.22.>

1. 교직원 직계자녀장학금 :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자녀증명서(입학 및 복학시에 해당),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3. 형제 재학장학금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제12조(추천) 전공주임교수는 장학금 수혜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순위를 결정한 후 학부(과)장을 경유 교학지원처장에게 추천한다.

제13조(장학생 교체추천) 장학생으로 이미 추천받은 학생 중 교체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 학부(과)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기간 이전에 교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장학생의 확정) 입학홍보처장은 각 전공주임교수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에 대한 성적 및 해당 사항들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장학생으로 확정한다.<개정 2021.7.22.>

제15조(장학생 명단작성 및 공고) 입학홍보처장은 확정된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학부(과)장에게 송부하고 장학생 명단과 장학금 지급내역 등은 학보에 게재 공고 할 수 있다.<개정 2021.7.22.>

제16조(근로장학생의 관리) ① 매 학년 초 근무 부서의 장은 근로장학생의 자격요건 및 근무조건을 제시한 근로장학생 추천요구서를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하여 인원배정을 요청한다.<개정 2021.7.22.>

② 입학홍보처장은 각 부서에서 요청된 근로장학생 인원을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에 배정한다.<개정 2021.7.22.>

③ 입학홍보처장은 매월 말일에 근로학생의 소속부서장이 제출한 근무실적 보고서에 의하여 근로장학생의 월 보수지급표를 작성, 총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지원처에 지급 의뢰한다.<개정 2021.7.22.>

④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는 수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4장 장학금 지급 및 제한

제17조(지급시안 작성) 교학지원처장은 매 학기 다음과 같은 장학금 지급시안을 작성하여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내장학금 학부(과)별 배정표
2. 장학생 선정기준
3. 전학기 장학생 학부(과) 학년별 현황
4. 장학금 예산액
5. 이중추천 방지를 위한 참고자료

제18조(장학지급금액 결정 및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금액 결정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고, 유효기간은 해당학기에 한 한다.

제19조(교내장학금 종류와 지급액)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원 장학금** : 가.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1명을 선발하여 4년간 수업료 전액을 감면하되, 신입생 차석 합격자에게도 수업료 전액을 1년간 지급할 수 있다.

나. 위 가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은 전 학기성적을 평점평균 3.00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00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2. **특별 장학금** : 입학성적이 우수한 입학자와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학생지원팀에서 추천한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특별장학의 종류와 지급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3.>

3. **신입우수 장학금** : 신입생중 학부(과)별 수석, 차석 합격자에게는 입학학기동안 입학전형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6.2.15>

4. **체육특기장학금** : 개인기능이 우수하여 전국규모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중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5. **예능 장학금** : 당해 연도에 본교에서 주최하는 각종 예능(음악, 무용, 미술)대회요강을 준하여 동일계열 입학자에게는 지정된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보훈 장학금** : 교육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및 직계자녀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매 학기말 학업성적이 평균평점이 2.0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가. 보훈대상자 본인은 교비로써 성적 등에 제한 없이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나. 보훈대상자의 직계 자녀는 교비에서 등록금의 반액을 지급하고, 반액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 지급한다.

7. **교직원 직계 장학금**

가. 본교 및 부속기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 자녀로서 본교에 재학중인 자의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인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

5년 미만은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를 지급한다.)<개정 2013.12.4>

1종 : 재학중인 직계자녀가 2인 이하인 경우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100%를 지급한다.

2종 : 재학중인 직계자녀가 2인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를 지급한다.(단,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기타 직원의 경우에는 1,2종의 50%를 적용한다.)

나. 당해 교직원이 정년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 전에 재학중인 자녀에게는 졸업 시까지 이를 준용한다. 단, 동일학생이 12학기를 초과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8. 학부 성적우수 장학금 : 재학생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3.5이상인 자중 성적순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9. 일반 장학금 :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중 학부(과)장의 추천 사유서를 첨부하여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성적 평점평균 2.0 이하자, 징계자는 추천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2.15>

10. 근로 장학금 : 본교 재학생 중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조달을 원하는 자에게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교내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게 하고 매월 근로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11. 공로 장학금 : 본교의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에 바탕하여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학생 중 입학홍보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7.22.>

가. 권위 있는 전국 및 국제대회 입상자

나. 교내·외에서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기타 교내 학생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2. 가족 재학 장학금 : 당해 학기에 가족이 함께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범위는 한가정의 부모, 형제, 자매, 부부에 한하여 지급하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미만인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개정 2013.12.4.><개정 2021.3.18.>

13. 후생복지 장학금 : 교내 각종 후생시설에서 얻은 순 이익금 중 일부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입학홍보처에서 접수받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자를 각 학부(과)장에 추천 의뢰하여 선발한다.<개정 2021.7.22.>

14. 외국인 장학금 :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를 따로 정한다.

15. 동창회 장학금 : 본교 동창회 운영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자를 총동창회에서 선발한다. 다만, 지급할 장학금액 및 인원은 총동창회장이 별도로 결정한다.

16. 산학장학금 : 가계가 곤란한자를 학부(과)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17. 해외유학 장학금

가. 대학졸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해외에 유학을 희망하는 자가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심사에 합격할 경우 국외의 자매대학 또는 희망대학에 교비 장학생으로 해외유학의 특전을 부여한다.

나.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어학연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8. 서영춘 장학금 :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생활이 곤란한 자를 각 학부(과)장 추천을 받아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선발한다.

19. 특성화 장학금 : 학부(과) 특성화에 부합되는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는 학부(과)장 추천과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20. 총장 장학금 : 본교 재학생 중 학과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승인 한자에 대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4.0이상으로 우수한자,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전국대회 등에서 입상한 자, 학업태도가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자, 그 밖에 학교나 학과의 명예를 높여 특별장학이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3.12.4>

21. 희망 장학금<개정 2013.12.4.><개정 2021.10.8.>

임실캠퍼스 소속학과 신입학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학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교내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22. 교육기부 장학금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부사업(교과목 학습지도, 예체능 지도, 특기적성 교육 및 멘토링활동 등)을 참여하는 학생(학기당 최소 10시간)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교내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신설 2013.12.4>

23. 컬처라이센싱 장학금 : 학기 중 공인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및 민간전공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3.12.4>

24. 장애우가정 장학금 : 학생 본인이 장애를 가졌거나 부모 중 한명이 장애를 가져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단, 특별전형 입학자는 제외한다.)<신설 2013.12.4>

25. 나눔 장학금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0분위에서 2분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내장학금의 중복수혜를 허용한다.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6.2.15>

26. 창업지원 장학금 : 본교에서 진행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2.15>

27. 국가장학금 유형2(교비) 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2에 대응하는 교내장학금으로 장학금액과 장학대상자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6.2.15.>

28. 재난특별장학금 <신설 2020.9.17.>

가. 국가적 질병사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및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의 학업장려 및 경제적 부담감 경감을 위해 긴급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장학금 지급 후 미등록 또는 학적변동(휴학 및 제적 등)이 발생하면 장학금을 환수조치 한다.

라.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타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29. 특별장학금(신입생 지원) <신설 2021.3.18.>

가. 신입생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학생별 최대 지급금액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장학금 지급방법은 선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라. 등록금 범위 내 타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마.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바. 휴학 및 제적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0. 토픽장학금 : 본교 외국인 신입생 중 토픽자격증 3급 이상 취득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1.24>

제20조(교외장학생 추천) 교외장학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생 추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외 장학단체에서 해당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부(과)에 이첩하여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 명의로 발송한다.

2. 해당학부(과)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외 장학생수의 학부(과)별 비율을 참작하여 입학홍보처장이 학부(과)를 선정하여 배정한다.<개정 2021.7.22.>

3.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4.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행정지원처에 입금시킨 후 동액수의 장학금 지급증서를 발급한다.

제21조(지급방법)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입학홍보처는 그 명부를 작성하고 장학증서는 학부(과)장이 학생에게 직접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입학홍보처장 및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7.22.>

②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게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장학증서로 수여하며 지급액은 당해 학기 납입금액에서 학비를 감면한다.

제22조(유효기간) 모든 장학금은 본인의 신청 및 학부(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학기에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당해 학기 등록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23조(장학증서 현금화 방지) 입학홍보처에서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증서는 등록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현금으로 반환 받을 수 없다.<개정 2021.7.22.>

제24조(지급결과보고) 입학홍보처장은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22.>

제5장 장학금의 지급 제한

제25조(이중수혜금지) ① 각종 장학금은 근로학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중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② 1인이 2종이상의 수혜대상자로 선발될 경우에는 본인이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 할 수 있다.

③ 교내장학금 수혜총액은 수혜학기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26조(실격)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1.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휴학 또는 제적자
3. 인정 이수학점인 기준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종별에 따라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인 자
5.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명예를 실추케 하였을 경우
6. 이중수혜자인 경우

제27조(장학생의 자격상실)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수혜자격이 상실되며, 장학대상 휴학자일 경우 미등록일 경우 수혜승계는 되지 않는다.

제28조(시행규칙) 이 규정 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2000.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1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2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